

『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11월 2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12월 18일

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례 및 수수료 표준요금표 중 “지방세납세증명서” 발급수수료 면제로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자 함.

○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을 구현하는 정보공개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법령개정에 따른 “지방세납세증명서” 수수료 폐지 (안 제6조1항)
 - 제4호 지방세납세증명서 수수료 면제 규정 삭제
- 「별표1」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일부 삭제
 - <증명> 5.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(1)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800을 삭제
- 「별표2」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 변경
 - 문서·대장 등, 도면·카드 등의 전산자료의 사본 수수료 중
 - 1매마다 A3이상 300원, B4이하 250원 → A3 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, B4 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
 - 복제 1건(10매 기준) 1회 250원 → 1회 200원
 - 녹음·녹화·영화필름·슬라이드의 복제 수수료 중
 - 10분마다 3,000원 →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,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
 - 사진·사진필름의 복제 수수료 중
 - 10분마다 5,000원 → 1건(1MB 기준)1회:200원, 1MB 초과 시 0.5MB마다 100원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 제1항
- 대통령령 제21755호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」 제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“지방자치법”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“지방세납세증명서” 발급

수수료를 폐지하고, 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 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법령개정에 따른 “지방세납세증명서”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안 제6조제1항제4호 규정을 삭제하고, 「별표1」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1건 800원을 삭제 하였음
- 또한, 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 이 개정됨에 따라 「별표2」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문서·대장 등, 도면·카드 등 전산자료의 사본 수수료와 녹음·녹화·영화·필름·슬라이드의 복제 수수료, 사진·사진필름의 복제 수수료 등의 요율을 변경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, 또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변경 하는 내용으로서 법령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